

수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5505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피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기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구정훈

변론 종결2024. 4. 11.

판결 선고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E과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한 상속포기를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E에게, 피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64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23. 5. 9. 접수 제5700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8311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F와 연대하여 1,972,868,000원 및 그 중 1,505,53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5. 20. 'E은 G와 연대하여 912,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관계

-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H의 소유였는데, H가 2022. 7. 2. 사망하자 가압류채권자인 I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22. 10. 4.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2) H가 사망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는데, E이 2022. 8. 5.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1343호로 상속포기(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를 신고하여 같은 법원이 2022. 10. 20.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 3) 위와 같은 E의 이 사건 상속포기가 수리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6475호로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에 따른 공유지분을 2022. 10. 20.자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의 각 공유지분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B, C은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마쳐진 후 2023. 5. 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E이 이 사건 지분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포기를 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B, C 명의로 이 사건 경정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E이 한 이 사건 상속포기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경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1)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의 배우자이자 피고 B, C의 어머니인 H의 소유였는데, E은 2022. 8. 5.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1343호로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0. 20.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이와 같은 E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이미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I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이후에 E을 제외하고 H의 상속인인 피고 B,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E이 한 이 사건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연운희

별지